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신현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31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. 18.

발 의 자 : 신현영 · 이성만 · 한준호
김정호 · 김병기 · 문정복
김한규 · 이인영 · 맹성규
이원택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한부모가족 아동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도록 하고,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및 재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상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·인사·조직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. 또한, 지역별 분원이 없고, 양육비이행관리원 명의로 소송을 할 수 없어서 소속 변호사들의 개인 명의로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함에 따라 직접소송 비율이 18.7%에 머물며 결과적으로 양육비이행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상황임.

또한, 현행법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소득·재산 등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양육비

채무자의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,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양육비 이행률이 40.3%에 불과하여 제재조치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하여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분원 설치 및 기관명의로 소송 수행 가능하도록 하여 직접소송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·재산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재조치 업무의 일부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하고,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).
- 나.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기관 명의로 소송에 관한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의2).
- 다.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·재산 등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(안 제16조 및 제17조).
- 라. 여성가족부 장관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, 출국금지 요청, 명단 공개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4조).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「건강가정기본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(이하 “한국건강가정진흥원”이라 한다)에 양육비이행관리원(이하 “이행관리원”이라 한다)을 둔다”를 “양육비이행관리원(이하 “이행관리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이행관리원은 법인으로 하고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③ 이행관리원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④ 이행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
4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5. 이사회에 관한 사항

6.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

7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
8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9. 내부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10.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⑤ 이행관리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⑥ 이행관리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⑦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비양육부·모와 양육부·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

2.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·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

3.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

4.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

5.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·모에게 양육비 이전

6.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

7.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

8.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

9.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

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행관리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.

⑨ 이행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임원 및 임기) ① 이행관리원에 임원으로 이행관리원의 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

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.

③ 이사는 이행관리원의 장의 제청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 감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한다.

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이행관리원의 장의 경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의3(이행관리원 변호사) ① 소송수행·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행관리원에 변호사를 둔다.

② 이행관리원 변호사는 이행관리원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「변호사법」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 다만, 「변호사법」 제2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③ 이행관리원 변호사의 임면·보수,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행관리원의 정관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이행관리원의 규칙으로

정한다.

제8조제1항 본문 중 “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장”을 “이행관리원의 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장”을 “이행관리원의 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소송업무 절차 등) ① 이행관리원은 이행관리원 명의로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등 업무(이하 “소송업무”라 한다)를 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이행관리원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행관리원을 대표한다.

③ 이행관리원이 소송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이행관리원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업무와 관련한 절차는 이행관리원의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”를 “제공을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 단서”를 “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본문 중 “양육비 채무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대통령령”을 “대통령령”으로 하고, 같은 항

단서를 삭제한다.

제24조제1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7.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8.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행관리원의 설립준비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행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(이하 “설립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설립위원회는 이행관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이행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

④ 설립위원회는 이행관리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

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
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이행관리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행관리원의 모든 소관 업무, 권리·의무 및 재산은 이 법에 따른 이행관리원이 그 설립등기일에 승계한다.

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행관리원이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이행관리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.

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행관리원의 장 및 소속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이행관리원의 설립등기일에 이행관리원의 장 및 소속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.

제4조(파견된 공무원 또는 공익법무관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공익법무관은 이 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본다.

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2제7항제4호를 삭제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양육비이행관리원)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「건강가정기본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(이하 “한국건강가정진흥원”이라 한다)에 양육비이행관리원(이하 “이행관리원”이라 한다)을 둔다. ②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비양육부·모와 양육부·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1의2.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·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2.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3.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4.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 지원 및 양육부·모에게 양육비 이전	제7조(양육비이행관리원) ① ---- ----- ----- -----양육비이행관리원(이하 “이행관리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 ② 이행관리원은 법인으로 하고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5.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

6.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

7.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

8.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

③ 이행관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③ 이행관리원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④ 이행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목적

2. 명칭

3.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

4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
5. 이사회에 관한 사항

6.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

7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
8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9. 내부규정의 제정·개정 및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폐지에 관한 사항

10.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운영
에 관한 중요 사항

⑤ 이행관리원이 정관의 기재
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
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
야 한다.

⑥ 이행관리원에는 정관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
한 직원을 둔다.

⑦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
업무를 수행한다.

1. 비양육부·모와 양육부·모
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

2.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
양육부·모와 미성년 자녀의
면접교섭 지원

3.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
을 위한 법률지원

4.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

5.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
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
심지원 및 양육부·모에게 양
육비 이전

6.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
한 제재조치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7.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

8.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

9.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

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행관리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.

⑨ 이행관리원에 관하여는 이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7조의2(임원 및 임기) ① 이행관리원에 임원으로 이행관리원의 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

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.

③ 이사는 이행관리원의 장의 제청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 감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

<신 설>

제8조(직원 등의 파견요청) ① 한
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장은 양육
 비 이행 관련 업무의 실효성
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
 성가족부장관을 거쳐 관계 기

위촉한다.

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
고, 이행관리원의 장의 경우 1
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의3(이행관리원 변호사) ①
소송수행·법률자문 등의 업무
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
여 이행관리원에 변호사를 둔
다.

② 이행관리원 변호사는 이행
관리원의 직원으로서 업무를
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「변
호사법」이 규정하고 있는 의
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 다만,
「변호사법」 제27조의 규정은
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③ 이행관리원 변호사의 임면
·보수,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
사항은 이행관리원의 정관으로
정한 사항 외에는 이행관리원
의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직원 등의 파견요청) ① 이
행관리원의 장-----

관에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9조(공익법무관의 파견요청) 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공익법무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-----.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공익법무관의 파견요청) ① 이행관리원의 장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의2(소송업무 절차 등) ① 이행관리원은 이행관리원 명의로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등 업무(이하 “소송업무”라 한다)를 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이행관리원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담당 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행관리원을 대표한다.

③ 이행관리원이 소송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이행관리원 명의를 표시하고 답

제16조(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) ① (생략)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·지방세, 토지·건물, 건강보험·국민연금,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이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려야 한다.

당변호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업무와 관련한 절차는 이행관리원의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6조(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제공을-----

-----. <단서 삭제>

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려야 한다.

<u>보·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.</u> ② ~ ⑥ (생략) 제24조(업무의 위탁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②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 제24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u> 7. <u>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u> 8. <u>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u>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